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현행)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변경)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를 구분하여 부과(안 제16조)

(현행)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대상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대상

다.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 삭제(안 제30조)

(현행)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변경)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라.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기간의 합리적 설정(안 제31조)

(현행)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준용

(변경)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과오납급 소멸시효 설정(안 제32조의2)

(신설)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 그 외 징수금 5년 설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수도법」, 「민법」,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부과기준과 환급절차 등 구체적 기준과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조치기간 : '20.12월)으로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환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